

● **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-315호**

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6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(안)
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, 취소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취지와 맞지 않거나 시·도지사의 자치권 침해 소지 조항 등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시·도지사의 자치권 침해 요소 포함조항 개정 (제4조, 제7조, 제12조, 제15조, 제17조 제18조)

-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·취소 등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근거가 없이 고시에서 정하거나, 시·도지사의 자치권 침해 요소가 포함된 조항 개정

나. 기타 (제22조)

- 재검토 기한 설정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(참조 : 지역혁신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imkorean@korea.kr

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(전화 : (044) 204 - 758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